#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운영규정 5-1-61

규정번호 5-1-61
제정일자 2021.9.13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 “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”(이하 “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 이 규정은 교육부의 “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”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근거한다.(개정 2023.06.19.)

제3조(규정의 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, 우리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한다.

## 제2장 조 직

제4조(운영체제) ① 총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른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총장 직속기구로 구성하고, 그 산하에 사업전담조직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대학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 운영조직을 구성한다.

③ <삭제(2023.06.19.)>

제5조(사업단) ① 총장은 사업단의 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을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하고,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창의융합교육센터, 스마트교육지원팀, 성인직업교육운영팀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3.06.19.)

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3.06.19.)

1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재상 설정 및 운영계획 수립
2. 전담인력 확보 및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(개정 2023.06.19.)
3. 사업단 관련규정 및 지침 관리(개정 2023.06.19.)
4. 사업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(개정 2023.06.19.)
5. 사업성과 및 자체평가 관리(신설 2023.06.19.)
6.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지원(신설 2023.06.19.)
7.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(신설 2023.06.19.)

8. 학부 및 학과운영위원회 운영지원(신설 2023.06.19.)
9. 기타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에 관한 사항(개정 2023.06.19.)

③ <삭제(2023.06.19.)>

제6조(창의융합교육센터) ① 창의 융합 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사업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3.06.19.)

② 창의융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3.06.19.)

1.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개정 2023.06.19.)
2. 사업화 연계기술(R&BD) 개발 지원 (개정 2023.06.19.)
3. 센터 교육시설 구축 및 관리(개정 2023.06.19.)
4. 센터 기자재 관리 및 운영(개정 2023.06.19.)
5. 창의 융합 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류 협력(개정 2023.06.19.)
6.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계된 지원사항(개정 2023.06.19.)

제7조(스마트교육지원팀) 스마트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모집 정원 관리
2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
3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모집 및 홍보
4. 학생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
5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지원
6. 채용확약(약정) 산업체 관리 및 잡매칭
7. 기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성인직업교육운영팀) 성인직업교육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성인재취업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
2. 재직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3. 성인직업교육 모집 및 홍보
4. 성인직업교육 학습자 상담 및 취업 지원
5. 성인직업교육 관련 산업체 관리 및 교류협력
6. 기타 성인직업교육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3장 재정 및 기타(장 신설 2023.06.19.)

제9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세부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(신설 2023.06.19.)

②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(신설 2023.06.19.)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학부운영위원회) ① 학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부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(신설 2023.06.19.)

②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부장 또는 사업단장으로 하고, 학과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.

③ 학부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정원조정
2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담교원 및 조교 인사
3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
4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지원
5. 기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학과운영위원회) ① 학과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과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신설 2023.06.19.)

②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산업체 및 학생대표(재학생)를 1/3이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.

1. 학과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
2. 학과 수업운영 및 비학위 과정 개발
3. 산학협력 및 학생 지도
4. 학과 예산 편성 및 집행
5. 교육용 기자재(비품) 선정 및 관리
6.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사업관리(장 신설 2023.06.19.)

제13조(사업계획 수립) ① 사업단은 학과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(신설 2023.06.19.)

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

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필요성
2.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
3.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계획
4. 성과관리 계획
5. 사업비 집행 계획
6.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4조(사업계획서 변경) 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신설 2023.06.19.)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주관기관(대학)의 주소(연락처), 대표자, 명칭의 변경
2.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
3. 참여교원의 변경
4.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
5. 참여기업 변경
6. 창의융합센터의 공간 변경

제15조(실적보고서 제출) 사업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23.06.19.)

## 제5장 재정 및 기타(장번호변경 2023.06.19.)

제16조(재정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명지전문대학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 국고지원금 및 대응사업비로 한다.(개정 2023.06.19.)

② 국고지원금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련 규정과 사업관리운영지침 및 명지전문대학 「예산편성·운용 지침」을 준용하여 편성·집행한다.(개정 2023.06.19.)

③ 사업단은 제2항 따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, 세부적으로 사업비 관리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다.(개정 2023.06.19.)

제17조(회계)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명지전문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19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·법령·규칙·훈령 및 우리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제4조제3항, 제5조~제19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11조제3항제5호, 제12조제3항, 제12조제3항제6호)